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나. 출장소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증평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